

2024 대구트립 활성화 - 여행상품 광고 용역 및 업무 대행 계약서



갑 : 주식회사 이든앤앨리스마케팅

을 : 주식회사 TK트래블코리아

2024년 05 월 27일

EAN

용역 및 업무대행 계약서

(주)이든앤엘리스마케팅(이하 ‘갑’이라 칭함)과 (주)TK 트래블 (이하 ‘을’이라 칭함)은 2024 대구트립 활성화 - 여행상품 광고 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의 용역 및 업무대행 계약(이하 ‘본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 아 래 -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을’에게 프로젝트 관련 실행, 운영업무를 위임하고, ‘을’은 주관사로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계약함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의 준수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의 범위)

1. ‘갑’이 의뢰하는 바에 따라 ‘을’이 수행하는 업무는 아래와 같다.
가. 대만 인바운드 여행상품 개발 및 운영
나. 대만 현지 바이럴 광고 (TRIPBAA 여행 블로거 포스팅 20 개)
2. 세부 업무 범위는 사전 협의를 통해 달라질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과업 지시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 3 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24 년 05 월 27 일부터 2024 년 08 월 31 일까지로 하며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기존 당사자의 권리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단, 계약기간은 상호 별도협의를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 4 조 (대금의 지급과 패널티)

1.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건 별로 별도 협의하며, 사전 협의된 단가표를 적용하여 진행한다. 단, 단가표에 없는 항목은 시세를 적용하여 당사자들이 별도로 협의하는 바에 의한다.
2. 사용한 견적 비용에 대한 검수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며, ‘을’은 실비정산에 대한 검증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이견이 없을 시 그에 따른 금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3. 만약, ‘을’이 대행업무에 대해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갑’에게 피해가 발생 시, ‘갑’은 이에 대해 ‘을’에게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대금 지급시 상계할 수 있다.



제 5 조 (대금 지불 방법)

1. ‘갑’은 실행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안별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대금의 지급은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총 대금의 25% 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을’은 프로젝트 실행종료 후 10 영업일 이내에 프로젝트 결과보고서와 함께 ‘갑’에게 서면으로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갑’은 청구서를 수령한 후 ‘갑’의 지급방식에 따라 ‘을’에게 [63]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본 조 제 2 항에 따른 대금 지급은 매월 2 회(15 일, 말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4. 단, 예외적으로 광고주의 상황에 따라 지급일이 변경될 경우, 상호간 협의하여 지급기일을 정하도록 한다.

제 6 조 (‘을’의 의무와 책임)

1. ‘을’은 본 계약 제 2 조의 행사 대행업무를 신의와 성실로 수행하며, ‘갑’의 명성이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을’은 대행업무의 진행상황 및 결과에 대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갑’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3. ‘을’은 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 3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을’, ‘을’의 임직원 또는 ‘을’의 지시를 받아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 3 자의 지적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갑’ 또는 제 3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갑’을 면책시켜야 한다.

제 7 조 (‘갑’의 의무와 책임)

1. ‘갑’은 ‘을’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행 업무와 관련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한다.
2. 기타 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갑’은 ‘을’의 요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8 조 (행사 동의)

‘을’이 제작, 기획 및 집행하는 행사 프로그램 및 제반 제작물은 집행 전에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9 조 (지식재산권)

1. ‘을’이 본 계약에 따라 산출한 유무형의 결과 또는 결과물의 소유권 또는 지식재산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사 대행에 따른 보고서 등 일체의 결과물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2. ‘을’은 본 계약 상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결과물을 ‘갑’에게 통지하며, ‘갑’이 지식재산권을 출원, 등록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력하여야 한다.
3. ‘갑’이 지불한 모든 제작물의 원본 및 그에 대한 저작권은 ‘갑’의 소유로 하며 대행 계약 기간 중 ‘을’이 관리한다.

제 10 조 (제작물의 법적책임)

‘갑’의 요청 및 승인 하에 ‘을’이 제작, 집행한 무대, 디스플레이, 부스 및 기타 행사 제작물에 대하여 자체의 내용 및 표현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을’이 부담하며 ‘을’은 ‘갑’을 면책시키고, 갑이 입은 손해나 책임 부담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 11 조 (비밀유지)

1.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는 결과로서 ‘을’이나 ‘을’의 대리인 또는 고문들이 ‘갑’으로부터 수령하거나 획득하는 모든 영업비밀, 기밀정보, 개인정보 및 자료 즉, ‘갑’이 회사 사업 또는 사무에 대해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되는 모든 영업비밀, 기밀정보, 개인정보 및 자료 등(이하 “비밀정보”)에 대해 본 계약기간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엄격하게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위 의무를 ‘을’의 임직원 등에게도 준수하게 하며, 이들의 의무위반은 ‘을’의 의무위반으로 본다.
2.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갑’의 "비밀정보"를 알게 된 ‘을’의 임직원이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다.
3. ‘을’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갑’이 요청하는 경우 ‘갑’으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를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4. 단, ① ‘갑’의 사전 서면허가에 의하거나 ② 관할법원 또는 행정관청의 공개 명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정보 또는 ③ ‘을’의 귀책사유 없이 공개된 정보는 본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5. 본 조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을’이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6. ‘을’의 기밀유지의 의무는 본 계약기간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한다.

제 12 조 (권리의무의 양도 및 겸업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 담보 제공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13 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서면에 의한 당사자 합의에 의한 경우

나. 본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이행 최고의 통지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구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다. '갑' 또는 '을'에게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은행거래의 정지사유 등 본 계약 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을'의 주요 자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 이에 준하는 법적 절차 및 사실상의 절차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을 어려운 경우

마. '을'이 관련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바. 기타 법률의 변경, 정부기관의 명령 등으로 인하여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제 14 조 (손해배상)

1.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위반한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2. 행사 준비과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준비에 들어간 실비 전액 및 행사 지연, 재 준비로 인해 추가되거나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3. '갑'과 '을' 중 어느 일방이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화재, 홍수, 폭동, 군사 행위, 노동쟁의, 정부의 조치 등으로 인한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상호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5 조 (일반 조항)

1. 본 계약서는 본 계약의 주요 사항과 관련된 이전의 합의나 협정을 대체한다.
2. 본 계약 조항의 제목은 편의상 기록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본 계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이용되지 아니한다.
3. 본 계약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항이 준거법에 의하여 무효, 부적법 혹은 집행 불능인 경우에도 본 계약의 잔여조항의 유효, 적법성, 집행 가능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새로이 유효하고 적법한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무효 조항의 본래의 의도된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4. 본 계약은 양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수정되거나 변경 될 수 있다.



제 16 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협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 1 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상기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2024 년 05 월 27 일

갑 : 주식회사 이든앤엘리스마케팅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7 길 36 15 층

대 표 이 사 이 정 훈, 홍 인 표



을 : (주)TK 트래블코리아

서울시 동대문구 신이문로 39 5 층

대 표 이 사 강 일 구

